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9월 23일
발 의 자 : 이진삼 의원
찬 성 자 : 장숙이, 김혜미, 이경선
황춘하, 김순길, 윤선경
박경희, 서호성,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고,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준용 조례의 정확한 제명 표기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7대 서대문구의회 2~4년차인 2016~2018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월정수당을 인상토록 하는 제7대 서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내역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되는 매월 월정수당을 2,242,500원에서 2,327,700원으로 하고(안 제3조 제1항)
- 나.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준용 조례의 정확한 제명 표기를 위해 「서대문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여비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로 변경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33조
- 제7대 서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(2014.11.7)

나. 예산조치 : 2016년도 예산에 반영

다. 입법예고 : 2014.11.7. 서대문구홈페이지에 게시된 7대 서대문구 의정비
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내역으로 같음

라.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월정수당 2,242,500원”을 “월정수당 2,327,700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서대문구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여비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월정수당)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<u>월정수당2,242,500원</u>을 지급한다. 다만,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당 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	<p>제3조(월정수당) ① ----- -----<u>월정수당2,327,700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<u>서대문구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여비조례</u>에 의한다.</p>	<p>제7조(준용) ----- ----- -----<u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</u>-----.</p>